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3

2024/6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Contents

국제법원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2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국제규범

유엔(UN)	8
UN	제4차 소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 개최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개최
아세안(ASEAN)	12
ASEAN	제43차 중-아세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 공동실무회의 (JWG-DOC) 개최

지역별 동향

중동	14
홍해	후티, 홍해 공격과 미국 리더십의 위기
아시아	17
필리핀	필리핀, 중국의 새로운 해안경비대 규정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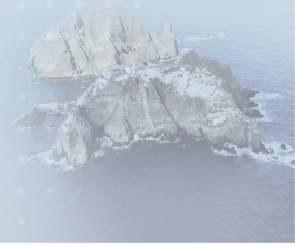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행사안내

3개월 내 행사 계획	19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원 민영훈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국제해양법재판소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조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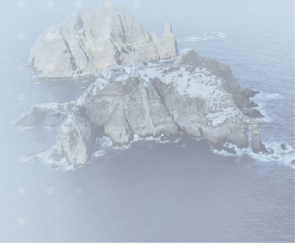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2024년 5월 21일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의 권고적 의견’이 발표되었다. 이하에서는 권고적 의견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조약의 해석에 관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항 및 제194조 제5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해석과 국가 재량권의 한계, 지속적인 속성의 의무(obligations of a continuing nature)에 대한 ITLOS의 접근법, 사전주의적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에 따른 유엔해양법협약 상 당사국 의무의 해석,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5항의 주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다른 국제규범의 사용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조치와 국가 재량권의 한계

ITLOS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해석에 관한 검토는 이번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항은

“각국은 ...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필요한(necessary)’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 ‘필요한(requisite)’, ‘필수적인(essential)’을 의미한다. 이 조문의 문맥상 ‘필요한(necessary)’은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이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all)’ 조치 또는 ‘모든(any)’ 오염원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해양환경 오염’의 폭넓은 정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제194조 제1항에 명시된 필요한 조치는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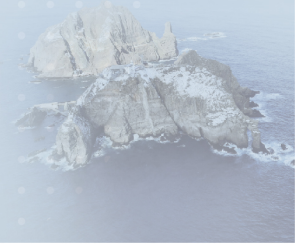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조치도 포함된다.

ITLOS는 제19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조문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가 이에 대한 무한한 재량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조치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이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국가들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과학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 규칙 및 표준 그리고 해당 국가의 가용 수단과 능력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제194조 제1항의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를 것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의 범위와 내용이 과학, 기술, 경제 및 재정 능력 등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ITLOS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대한 이와 같은 유연성을 설명하면서, 조치 의무의 유연성이 제19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국가 의무의 이행을 부당하게 연기하거나 면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5항에 따라 국가가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협에 처한 생물 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다시 필요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 검토했다. ITLOS는 이 조항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필요한’이란 의미는 허용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기서 ITLOS는 국가 재량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협약 제194조 제5항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는 법률 및 규정의 제정 및 시행, 또는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수행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적 가용 과학(best available science)’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 이러한 조치의 이행은 관련 국내법 체계에 따라 달라지며 재량권 행사를 허용한다. 그러나 국가가 필요한 조치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해저분쟁재판부가 심해저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합리적이고 관련성이 있으며 인류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련 선택지를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치가 인류 전체의 이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는 경우, 신의성실에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속적인 속성의 의무(obligations of a continuing nature)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확인한 여러 적용가능한 의무는 지속성(a continuing nature)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의 계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국제규칙, 기준, 권고, 관행 및 절차의 수립 및 발전에 있어서 협력을 요구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7조의 일반적 의무와 관련하여 ITLOS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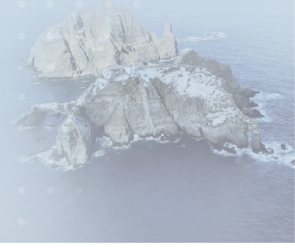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이 의무는 지속성을 띠고 있다. 특히, 이 의무는 당사국들이 과학 지식의 진화에 따라 새로운 또는 개정된 규제 수단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또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과 같은 특정 조약의 채택이 당사국들의 협력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제2절의 협력 의무를 고려할 때, ITLOS는 협약 제194조 및 제192조와 함께 제197조, 제200조, 제201조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해 당사국이 직접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의미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협력하도록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ITLOS는 협약 제204조에 따른 해양오염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는 모니터링과 감시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속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ITLOS는 또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특정 의무에 따라 국가에게 요구되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제194조 제1항에 따른 의무의 본질을 분석하면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 조치해야 하는 의무의 경우, ITLOS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해저분쟁재판부의 심해저 권고적 의견에서, 상당한 주의는 가변적 개념(variable concept)이며, 상당한 주의의 기준은 상당한 주의의무가 적용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에는 과학 및 기술 정보, 관련 국제 규정 및 기준, 피해의 위험성 및 관련 긴급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의 기준은 시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ITLOS는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제192조의 일반적 의무의 내용은 하나의 상당한 주의의무로서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ITLOS는 또한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는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의 보전’은 관련된 활동과 해양환경에 대한 위협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사전주의 접근법(Precautionary Approach)에 따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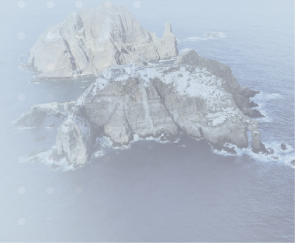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ITLOS는 이번 권고적 의견 여러 부분에서 사전주의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관련 의무들을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94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고려할 때, ITLOS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과학적 확신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경우, 국가는 인위적 온실가스로부터 해양오염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사전주의적 접근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이 사전주의적 접근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협약은 이러한 접근법을 잠재적 해로운 영향을 포괄하는 해양환경오염의 개념에서 묵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206조에 따라 계획된 활동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의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ITLOS는 이 조문에서 사용된 용어가 관련 국가의 재량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전주의적 접근법이 이러한 국가의 재량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재량권은 제한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ITLOS는 제196조 제1항의 의무가 ‘할 수 있다(may)’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전주의적 접근법이 내포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6조 제1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may, 초래할 수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제규범에 근거한 제194조 제5항의 해석

이번 권고적 의견은 다른 관련 국제규범에 비추어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제5항의 주요 용어들을 해석한다. 이는 ‘남중국해 중재판정(C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앞서 언급한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바와 같이, 제194조 제5항의 의무는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해양생물체 서식지의 보호와 보존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 이들 용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ITLOS는 남중국해중재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생태계(ecosystem)’라는 용어를 ‘생물다양성협약(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정의에 근거하여 해석했다. 그리고 ‘서식지(habitat)’라는 용어는 남중국해중재재판소와 관계없이 CBD에 근거하여 해석했다. 그리고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생물종(deplet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으로 간주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ITLO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부속서들을 참고했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현재의 유엔해양법협약 상 환경법학 분야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적 의견의 도입 부분에서,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확인하며 살아있는 규범으로 적용하기 위해 협약과 다른 국제규범과의 조정과 조화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글이 권고적 의견의 모든 측면을 다루지는 않지만, ITLOS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오염으로 규제하기 위해 협약의 해석에 대해 문맥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의무를 확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의무 위반이 국가의 국제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ITLOS는 제194조 및 제192조의 의무가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를 만족하기 위해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 또는 최소 기준에 대해 어떠한 국제 기준을 참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 7번째로 많이 배출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우리에게 특별히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만족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채택하고 있는 정책들이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한 주의의무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2021년 기준)

총배출량(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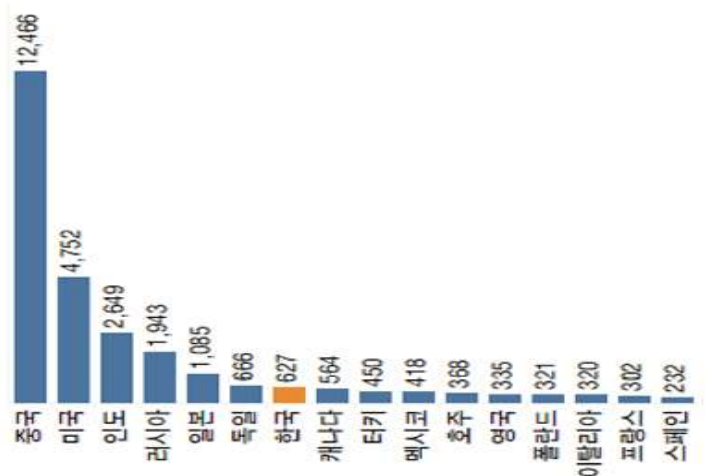


그림 출처:
매일노동뉴스(2023.09.15.)(검색일:
2024.6.13.)

* EJIL:Talk!에 게재된 “Joshua Paine, The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Selected Issues of Treaty Interpretation”을 번역, 편집, 분석한 글이다.

출처: [1] EJIL:Talk!(Joshua Paine)(2024.6.3.), The ITLOS Advisory Opinion on Climate Change: Selected Issues of Treaty Interpretation, <https://www.ejiltalk.org/the-itlos-advisory-opinion-on-climate-change-selected-issues-of-treaty-interpretation/>(검색일: 2024.6.13.)

[2] ITLOS(2011.2.1.),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Sponsoring Persons and Entities with respect to Activities in the Area(Advisory Opinion)

[3] South China Sea Arbitration(Philippines v China)(Award), PCA Case No. 2013-19(2016.7.12.)

[4] 매일노동뉴스(2023.9.15.), [박영삼의 통계로 보는 노동] 탄소배출 세계 7위 한국, 기후변화를 어떻게 인식할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40>(검색일: 2024.6.13.)

[5] 지표누리(2024.1.4.), 온실가스배출량,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88#:~:text=%ED%95%9C%EA%B5%AD%EC%9D%98%20%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B%9F%89,%EC%97%B0%ED%8F%89%EA%B7%A0%202.7%25%EB%A5%BC%20%EA%B8%B0%EB%A1%9D%ED%95%98%EC%98%80%EB%8B%A4>(검색일: 2024.6.13.)



유엔

UN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제4차 소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 개최

2024년 5월 7일, 유럽연합이사회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안티카바부다에서 개최될 제4차 소도서개발도상국(SIDS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국제회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IDS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국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소도서국을 의미한다. SIDS는 경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관광 및 어업 등에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또한, SIDS는 식수나 식량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폭풍, 홍수등의 자연재해에도 민감하다.

소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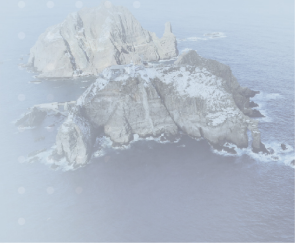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SIDS 국제회의는 기후변화와 경제문제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약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제1차 SIDS 국제회의는 1994년 바베이도스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사회는 이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SIDS가 직면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SIDS의 경제적·환경적 문제 해결과 구체적 조치의 제안을 위해 ‘바베이도스 행동계획(BPoA : Barbados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BPoA는 해양자원관리, 자연재해, 관광, 에너지 자원에 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차 SIDS 국제회의는 2005년 모리셔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바베이도스 행동계획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이 계획을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으로 개정하였다.

제3차 SIDS 국제회의는 2014년 사모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결과 SIDS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모아 행동계획(Samoa Pathway)’이 채택되었다.

소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 개최 10년 주기의 적절성 문제 논의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SIDS가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SIDS가 이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오히려 SIDS가 생물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전 세계 해양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였다.



유엔

UN

이번 회의에서는 10년 후 회의가 개최될 때 일부 SIDS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SIDS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으며, 경제 규모가 제한적이고 다각화되지 않아 외부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난에 취약한 특징을 나타낸다. SIDS의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SIDS 회의 개최 주기로 '10년'이 과연 적절한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제4차 회의의 일부 참가국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책 마련을 위해 격년 주기의 SIDS 지도자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제4차 소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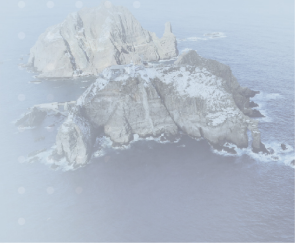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SIDS의 경제 활성화 및 해수면 상승 문제, SIDS 간 협력, 기후재원 조달 강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재원 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기후재정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후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자들의 잠재력을 언급하면서 SIDS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 제4차 회의결과를 통해 참가국들은 SIDS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조치를 적시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선언(Barbados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SIDS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주로 개발 협력, 기후변화 대응, 해양 보호, 경제발전 및 무역, 문화 교류 및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SIDS와 우리나라는 상호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한-태도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SIDS를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해양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출처 : [1] European Council(2025.5.07.), "Council Conclusions o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5/07/council-conclusions-on-small-island-developing-states-sids/>(검색일: 2024.6.11.)

[2] Earth Negotiation Bulletin, "Summary report, 27-30 May 2024", <https://www.enelamericas.com/en/media/press/20221/03/enel-americas-finalizo-el-piloto-de-calidad-en-infraestructura-d.html>(검색일: 2024.6.11.)



유엔

UN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개최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가 2024년 5월 31일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교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남중국해 문제 극복을 위한 협력과 해양력 강화 문제를 다루었다.

그림 2.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는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그림 출처: THE ASIAN

전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

이 회의에서는 '오늘날 전 세계 안보의 위협과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증가, 팬데믹에 대한 공포, 중동 테러리즘, 남중국해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문제 등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논의되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안보역량 갖추고 있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안보는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동남아시아에서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유엔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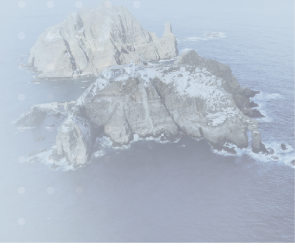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기술과 훈련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과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의 경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 전체에 해양영역 인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과 상황 변화와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1] U.S.Embassy in Singapore(2024.6.03.), "THE NEW CONVERGENCE IN THE INDO-PACIFIC" REMARKS AT THE 2024 SHANGRI-LA DIALOGUE", <https://sg.usembassy.gov/the-new-convergence-in-the-indo-pacific/>(검색일: 2024.6.11.)

[2] 데일리안(2024.6.03.), "신원식이 상그릴라 대화서 강조한 3가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67611/?sc=Naver>(검색일: 2024.6.11.)



아세안

ASEAN

전문연구원 이 서 희

제43차 중-아세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 공동실무회의(JWG-DOC) 개최

제43차 중-아세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이행 공동실무회의(JWG-DOC : The Joint Working Grou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Conduct of the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는 2024년 5월 13일~15일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 :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남중국해 현황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 Code of Conduct)'의 조기 체결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태국은 JWG-DOC 회의에 이어서 2024년 5월 16~17일에 남중국해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는 DOC에 따른 아세안과 중국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서, 이 워크숍 참가자들은 남중국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증진에 관해 논의하였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입장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과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따른 필리핀의 법적 권리를 근거로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남중국해 난하이 주다오 제도와 관련 해역을 최초로 발견한 이후, 자국이 이 해역에 대한 지속적·평화적·효과적인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한 최초의 국가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이 확고한 법적·역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자국의 관할 해역에서의 순찰, 법 집행 활동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것이므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국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재재판소에 남중국



아세안

ASEAN

해 문제를 회부했다고 하면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DOC를 비롯한 국제법의 위반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자국이 이 중재를 수락하지도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히면서, 중재재판소 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떤 청구나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은 중재재판소 판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관련 책임이 전적으로 필리핀에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핀이 중국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상에서 빈번한 갈등을 일으켰으며, 허위정보를 국제사회에 퍼뜨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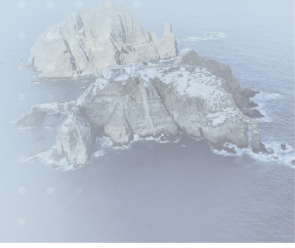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다섯째, 중국은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DOC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OC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섯째, 중국은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의 이익 및 권리 수호를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 당사국이 아니지만,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아세안-중국 간 협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과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의 보장, 지역 안보, 다자 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1]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Switzerland(2024.6.03.),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s Remarks on Philippine President Marcos's Speech Concerning the South China Sea Issue at the Shangri-La Dialogue", http://ch.china-embassy.gov.cn/ger/fyrth/202406/t20240603_11375565.htm(검색일: 2024. 6.11.)



중동

홍해

전문연구원 민영훈

후티, 홍해 공격과 미국 리더십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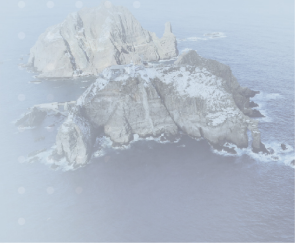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미 바이든 행정부가 홍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리더십을 결집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피해가 제한적이고 경제적 효과도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적 결집과 군사적 지원을 받는데 미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전략에 대한 유럽과 걸프 지역의 불만

먼저, 유럽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이견을 표명했으며, 동시에 번영의 수호자 작전의 전략적 목표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유럽 해상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별도의 해상안보 작전인 ‘아스피데스(Aspides)’를 발표했다. 같은 상황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열된 작전은 홍해 내에서 동맹국간 긴장을 야기했다. 이 아스피데스는 프랑스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군 관계자들은 아스피데스가 군사적 차원에서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가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아스피데스는 4척의 군함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제한된 방공능력을 가진 유럽 국가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방공능력의 부족은 해군 함정의 현장 대응을 통해 상쇄될 수 있지만, 현재 아스피데스는 그러한 전략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해군이 후티의 여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터 30(Aster 30) 지대공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 한 대당 약 11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작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은 걸프지역 동맹국들과도 홍해 위기 대응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6개 회원국 중 바레인만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리트(UAE)는 홍해 예멘 분쟁 이전부터 미국과 분쟁을 겪고 있다. 오바마



중동

홍해

행정부는 사우디가 주도한 예멘 작전을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후티 반군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자 걸프 국가들을 비판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연합을 지지하면서 관계가 나아지는 듯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후티 반군을 국무부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사우디 연합군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군에 대한 공격이 재개되었다. 2021년 이러한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후티 지도자들이 사우디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와의 협력을 꺼리고 있어 난항이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에미레이트는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후티 반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동 정책과 향후 문제

현재 홍해 위기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있어 지도력 부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대체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미-중 경쟁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동맹국가들이 이러한 유럽의 역할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홍해와 같은 해양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미국의 해군 자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단시간내 유럽이 미국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해양 안보에 있어서 자유로운 항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안보를 요구하기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역할은 일정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티 공격에 대한 인도의 전략은 서방 세력과 함께 행동하면서 인도의 군사적 비동맹을 발전시키고 지역 분쟁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암묵적으로 미군의 중동 현시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외교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자국 관할 해역에서의 세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지도력 부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을 택하기 보다 혜택은 누리되 자국의 의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해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에 걸쳐 분열을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기존의 지역 연합을 지양하고 임시 동맹 또는 연합 구축으로 외교적 군사적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 변영의 수호 작전의 좌절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동 안보에 있어 미국의 역할 약화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홍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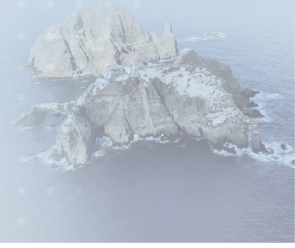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후티 반군으로 인한 홍해 위기가 당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는 현상은 또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고자 할 경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인도양 및 홍해 등에서 인도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어 미국의 지도력 약화가 직접적인 중국의 세력 증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영유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 세력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티 반군의 위기가 감소하고 풍선효과로 미 해군의 남중국해 현시가 강화될 경우 남중국해 갈등은 관리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나, 단기간 내 홍해 위기가 악화될 경우 중동에 대한 미국의 역할 요구는 증대할 것이며, 이 경우 남중국해의 갈등은 관리보다는 우려 또는 갈등 고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 해상 공급망은 이러한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1] Atlantic Council(2024.5.16.), The Red Sea Attacks highlight the erosion of US leadership in the regions,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menasource/red-sea-attacks-houthis-biden-administration-leadership/> (검색일: 2024.6.13.)

[2] Port Technology(2024.3.28.), IMO calls for immediate end to attacks in Red Sea,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imo-calls-for-immediate-end-to-attacks-in-red-sea/> (검색일: 2024.6.13.)

[3] UK Parliament(2024.3.1.), UK and international response to Houthis in the Red Sea 2024,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930/> (검색일: 2024.6.13.)



아시아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필리핀, 중국의 새로운 해안경비대 규정 비난

필리핀 외교부는 중국이 5월 26일에 발표할 예정인 「중국 해안 경비대법」의 집행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5월 15일에 발표되어 6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필리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1년 중국 해경법

「중국 해안 경비대법」은 2021년 1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해상 관할권 내 법 집행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양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자국의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검색, 나포, 강제 퇴거 등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해경은 불법어업, 해적행위, 해상밀수 등 다양한 해상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해양자원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주변국은 「중국 해안 경비대법」이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변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필리핀, 중국의 새로운 해안경비대 규정에 관한 성명 발표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서필리핀해 분쟁 수역 내에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필리핀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 등 조약상 의무에 따른 입법을 강조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중국 해안 경비대법」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률 시행의 직·간접적 효과, 관련 국가의 대응 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해안 경비대법」의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시아

필리핀

출처 :[1] Philippine Information Agency(2024.5.27.), “Philippines denounces China’s new coast guard regulations“, <https://www.pia.gov.ph/philippines-denounces-china-s-new-coast-guard-regulations//>(검색일: 2024.6.11.)

[2] China’s Leader in Online Legal Research(2024.5.27.), “Coast Guard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www.lawinfochina.com/Display.aspx?LookType=3&Lib=law&Cgid=351832&Id=34610&SearchKeyword=national%20security&SearchCKeyword=&paycode=&EncodingName=big5>(검색일: 2024.6.11.)



3개월 내 행사계획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 2024년 4월 8일 ~ 4월 9일 /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 주요 내용 니카라과의 독일 상대 '대량 학살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독일의 의무 위반 혐의 구두심리(니카라과 구두변론 4월 8일, 독일 구두변론 4월 9일)

제4차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 협상위원회 | 2024년 4월 23일 ~ 4월 29일 / 캐나다 오타와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하는 국제협약 초안 마련,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제고 등 생산단계 규제 포함 여부 등 쟁점 논의

군서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SIDS4) | 2024년 5월 27일 ~ 5월 30일 / 앤티가바부다

- 주요 내용 지속가능개발 진행 상황 검토, 번영을 위한 새로운 향후 10년간 파트너십과 솔루션 제안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부간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가관할권 밖인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논의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규범 현안 관련 강의

국제법 캠프 | 2024년 7월 18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 내용 신기술과 인권 및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해양법